

제267회 임시회  
광진구의회

**서울특별시 광진구 한국자유총연맹  
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
심사보고서**



2024. 2. 5.

**기획행정위원회**

# 서울특별시 광진구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2172
----------	------

2024. 2. 5.  
기획행정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24. 1. 18.

나. 회부일자 : 2024. 1. 25.

다. 상정일자 : 2024. 1. 30.

## 2. 안건설명

가. 제안설명자 : 고상순 의원

나. 제정이유

광진구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·봉사하고 있는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육성과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함.

## 다. 주요내용

- 가. 구정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이라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.(안 제1조)
- 나.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한국자유총연맹 조직, 한국자유총연맹 회원,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에 대한 정의를 규정함.(안 제2조)
- 다. 「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지원 사항을 규정함.  
(안 제3조)
- 라. 지원 신청 및 정산 절차에 대해 규정함.(안 제4조)
- 마. 표창 근거를 규정함.(안 제5조)
- 바. 시행규칙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.(안 제6조)

## 라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첨부
- 다. 합 의: 해당사항없음
- 라. 기 타
  - 1) 입법예고(2024. 1. 24.~2024. 1. 28.) 결과: 접수된 의견 없음
  - 2) 부패영향평가, 성별영향평가, 규제심사: 해당사항없음

### 3. 전문위원 검토의견 (전문위원 최미화)

○ 의안번호 제2172호 「서울특별시 광진구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은 2024년 1월 18일 고상순 의원이 제안하여 2024년 1월 25일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으로,

○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규정 및 건전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되었음

○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,

-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제1항에서는 「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3조<sup>1)</sup>에 따라 다음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서는 「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2조<sup>2)</sup>에 따라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 목적 외 사용 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음

- 
- 1) 제2조(국·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자유총연맹(이하 “총연맹”이라 한다)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「국유재산법」 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·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·수익하게 할 수 있다.
  - 2) 제3조(출연·보조 등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총연맹에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, 그 밖의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.

1.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
2.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
3.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의 교육·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
4.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에서 시행하는 각종 기념식 및 행사에 필요한 경비
5.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- 안 제4조에서는 보조금 지원신청 및 정산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이 한국자유총연맹 회원 및 조직에 표창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

#### ○ 종합 검토의견

- 본 안건은 한국자유총연맹 광진구지회 및 그 산하 회원 단체의 활동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하여 한국자유총연맹의 발전과 향상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,
- 상위법인 「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」에 근거하여 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, 향후 본 조례안이 시행되면 경비 등의 지원 시 유사 법정 단체들과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

#### 4. 질의 및 답변요지

- 회의록 참조

## **5. 토론**

- 회의록 참조

## **6. 심사결과**

-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

## **7. 기타 필요한 사항**

- 없음